

第244回国會
(臨時會・閉會中)

政治改革特別委員會會議錄

第 2 號

國會事務處

日 時 2004年1月30日(金)

場 所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審査된案件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1

(14시18분 개의)

○**委員長 李在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치개혁안협의의견

○**委員長 李在五** 의사일정 제1항 정치개혁안협의의견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1월 13일 제1차 회의를 한 이후 보름 정도 기간 동안 3개 소위원회가 매우 활발하게 정치개혁입법을 논의한 결과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소위원회별로 그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정 사안을 의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정 연휴 끝나고 지난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각 소위원회가 열심히 논의한 결과 중에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된 것은 미합의된 대로 일단 보고를 듣고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미합의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중간점검회의 차원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세훈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위원**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오세훈 위원입니다.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제1차 정치자금법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오늘까지 본 위원을 포함해서 한나라당 박종희 위원, 李在五 위원, 새천년민주당의 金孝錫 위원, 黃昌柱 위원, 열린우리당의 정장선 위원과 함께 여덟 차례에 걸쳐서 심도 있는 회의를 한 결과 다수 항목에서 합의를 도출했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후원회에는 기업 및 법인·단체의 후원을 금지하고, 기업 및 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은 기업 등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합의했습니다.

둘째, 중앙당후원회의 폐지 여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되, 다만 이를 존속시키는 경우에는 중앙당후원회의 모금한도액은 50억 원, 개인의 중앙당 기부한도는 1000만 원 상한, 500만 원 초과 공개로 잠정 합의하고,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 셋째 동시지방선거 시 유권자 1인당 1800원으로 하던 선거보조금을 800원으로 축소하고, 넷째 국고보조금의 배분·지급과 관련해서 현행의 배분 기준을 유지하되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득표한 정당의 득표수비율 배분기준을 지역선거구 의원 득표수와 정당투표 득표수 비율을 합한 수를 2로 나누는 비율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다섯째 국회의원선거의 전국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의 지역구후보자를 여성으로 추천한 정당에 대해서

여성추천보조금을 계상·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여섯째,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예비후보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후원금 모금액을 환수하도록 하고, 당내 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미사용 잔액을 환수하도록 하며, 예비후보자등록 시 등록서류 중 벌금형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일곱째, 후원금품의 모집방법으로써 기존의 모금방법 외에 신용카드, 예금계좌 입금,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추가하도록 하였으나 집회행사에 의한 모금방법의 존속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덟째,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은 선관위에 신고된 복수계좌를, 지출은 단일계좌에 의하도록 하고 1회 100만 원 이상 기부, 50만 원 이상 지출 시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확인이 가능한 방법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아홉째, 정당의 회계처리 보완과 관련하여 정부의 회계처리에 준하여 구입품의·지출결의제도를 도입하고 중앙당에 예산결산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인회계사의 자격요건을 비당원 중에 공인회계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하고 공인회계사의 부실·불법 감사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며, 후원회의 회계보고는 선거가 없는 해에는 2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등록 시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의 기간 중 1회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열 번째, 소액 다수 개인후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1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 그 이상은 소득공제를 하기로 잠정 합의하였으며, 열한 번째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처벌형량과 공소시효의 연장에 관하여는 현행 1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강화하고, 회계책임자 외의 자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외에 지출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열두 번째, 선관위의 권한 강화와 관련하여 임의동행요구권, 출석요구권,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은 선거법소위의 내용과 체계를 맞추어서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일부 합의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후원회와 관련하여 지구당후원회의 폐

지와 소액 다수 개인후원회의 허용에 대해서는 합의하였으나 개인의 1회 및 연간한도액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 했습니다.

둘째 중앙당과 시·도지부 후원회의 폐지 내지는 존속과 관련하여 계속 논의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후원회의 설치 확대와 관련하여 당내 경선 참여자의 모금한도, 고액기부자 명단 공개와 관련하여 1회 및 연간한도, 정당의 중앙당과 정책연구소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배분비율 등과 관련하여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넷째, 정치자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하여 1조 3매 정액영수증제와 기부자 보관용에 후원회 명칭 미기재, 500만 원권·1000만 원권 등 고액영수증 발행 등에 대해서는 합의되었으나 정액영수증원부의 선관위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소위원회에 참여하신 소위원들께서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내용 여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현재 보고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합의사항에 합의가 안 된 것을 합의사항으로 했다든지, 합의가 된 것을 안 된 것으로 했는지……

○**정장선 위원** 자료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렇습니까?

○**정장선 위원** 예, 정치자금법소위원회 회의결과 자료 5페이지의 미합의사항에서 후원회 관련 제5항의 고액기부자 명단공개를 보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서 “연간 500만 원, 1회 100만 원 초과 기부자 명단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개인후원회를 500만 원까지만 하도록 했는데 500만 원 초과할 경우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거든요. 지금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치자금법소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중 잘못 기재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장선 위원** 관련된 것이 있어도 이것은 나중에 합니까?

○**委員長 李在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할 기회가 있습니다.

○원희룡 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것도 다음에 하시지요. 보고 다 듣고 합시다.
 ○원희룡 위원 아니,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오세훈 간사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제가 원래 정치자금소위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비후보자의 모금한도액과 관련해서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몇 페이지지요? 다른 자료는 인용하지 마시고 보고한 이 자료만 갖고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예, 2페이지에 “국회의원 및 예비후보자 후원회의 모금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 규정에 보면, 이것이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로 적용이 되는 것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연간 1억 5000만 원일 텐데 그러면 예비후보자는 120일 전부터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했수로는 2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한번 1억 5000만 원 모금하고 해가 바뀌면 며칠 뒤에 다시 1억 5000만 원을 해서 총액 3억, 또는 만약에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는 이것을 2배로 늘린다고 하면 총액 4억 5000만 원까지 예비후보자들이 모금하도록 허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적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예비후보자가 120일의 선거운동기간 동안에 쓸 총액을 1억 5000만 원 정도로 상정을 하고 한 것인지 이 점이 좀 애매해 가지고 정확한 뜻을……
 ○委員長 李在五 답변하시지요.
 ○오세훈 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었는데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자로 말씀하신 부분은 아니고, 예비후보자 단계에서와 후보자 단계에서의 모금한도액이 따로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원희룡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세훈 위원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정도로 한정됩니다.
 ○원희룡 위원 그러면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1억 5000만 원 그렇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세훈 위원 그렇지요.

○원희룡 위원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해가 바뀌었으니까 1억 5000만 원 다시 모금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세훈 위원 예.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선거운동할 수 있는 기간이 120일인데 이 기간 동안 1회에 한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오세훈 위원 예.
 ○委員長 李在五 좋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이병석 위원님!
 ○이병석 위원 오세훈 위원님!
 소위 합의사항 1번 중 “법인·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 가운데에서 “그 가족”의 범위를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상의 가족범위를 얘기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오세훈 위원 민법상의 가족을 상정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석 위원 민법상 가족이요? 그러면 직계존·비속해서……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김성호 위원 일단 각 소위의 보고를 전부 다 받은 다음에 다시 각 소위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거나 이견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의사진행의 효율성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고를 다 받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은 간단한 질의사항이니까……
 ○이병석 위원 이 사항은 이미 소위에서 합의를 보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문이나 문제제기가 없습니다. 다만 요약해서 보고한 내용이 혹 다소 설명이 되지 않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확인작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의사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민법에 규정된 가족의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요?
 ○오세훈 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정배 위원** 그 점에 관해서는 이따가 토의시간에 좀 말씀드릴까요?

○**委員長 李在五** 예, 토의시간에 합시다. 왜냐 그러면……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일단 제가 확인하는 것은 소위 간사가 보고한 이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소위 위원들이 기재가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확인하고 나머지는 토의시간에 합시다. 그렇게 해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금 순서를 바꾸어서 金聖順 위원님 나오셔서 정당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金聖順 委員** 金聖順 위원입니다.

정당법개정안에 대하여 정당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저를 비롯해서 한나라당의 심규철 위원, 정의화 위원, 열린우리당의 김성호 위원과 함께 정당법의 개정 방향에 대하여 두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그간 정치개혁 과제로 논의되어 온 지구당제도 폐지 등 정당법의 획기적인 개정에 완전 합의하였습니다.

합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구당제도의 완전 폐지입니다.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으로 구성토록 하여 현재의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당 연락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사실상 지구당을 대체할 수 있는 여하한 유사 조직의 설치도 금지토록 하였습니다.

금번 지구당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 정당사의 획기적인 사건으로서 향후 정치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만 상시적인 조직은 두지 않되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구당 폐지에 따라 현재의 시·도지부를 대체하는 시·도당은 전국 16개 시·도 중 5개 이상의 시·도에 두도록 하고, 시·도당의 법정 당원 수는 각 시·도당 마다 1000명 이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입당 및 탈당은 물론 정당의 대의기관의 결의도 인터넷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인터넷 보급의 확대와 이용자의 확산 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

하였습니다. 따라서 당원이 되고자 입당하거나, 탈당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의 입당 또는 탈당신청서 이외에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입당 신청 또는 탈당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당의 대의기관의 결의도 입당 또는 탈당의 경우와 같이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당 또는 해산 등의 결의사항도 인터넷을 통한 투표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공직선거후보 추천 시 당내 경선 사무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근거규정 신설입니다.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 사무는 공정성이 보장되도록 정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넷째, 당내 경선 불복자의 출마제한입니다.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있어서 당내 경선을 통하여 추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가 된 자로서 당해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로 추천되지 아니한 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공직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여성의 원내 진출기회 확대입니다.

보다 많은 여성들의 원내 진출이 이루어지도록 비례대표 전국선거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여성의 비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중 100분의 30 이상을 추천한 경우 정치자금법에 의한 공직후보자여성추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정당의 정책개발 기능 강화 및 정치자금 지출의 투명화입니다.

정당발전에 관한 연구, 학술활동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정치자금 지출의 공개 등 정당의 재정 및 회계처리의 투명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정책연구소와 예산결산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소위원회에서 합의한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당법소위원회에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보고 문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천정배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정배 위원 천정배 위원입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대하여 선거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제1차 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어제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한 결과 여러 항목에서 합의를 도출했으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합의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둘째, 선거기간 전의 정책토론회와 선거기간 중의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선관위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선거부정감시단은 선거일 전 120일부터 5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하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과 선관위가 2분의 1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되, 선관위는 별도로 관리요원 5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조 편성 시에 정당과 선관위 추천자를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해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하도록 하되,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하고 그 실명제의 방법은 전자서명제 대신 신용정보회사의 실명 확인을 거치는 방법을 채택하기로 대체적인 의견이 접근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채택하기로 합의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리고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매체의 범위 및 벌칙 등에 관해서도 조문 검토 후 추후 결정하도록 잠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원내 교섭단체의 대표위원들과 협의하여 위촉하되, 당적을 가진 자와 국회의원은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원내 정당은 의견 개진의 기회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17대 국회의원선거 후부터는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변경하고,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을 목요일에서 토요

일로 변경했습니다.

일곱 번째, 후보자 등록 시 최근 5년간 후보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납세 및 체납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되 직계존속의 재산이나 납세상황에 대해서는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덟 번째,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 요건을 완화해서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경우 또는 당선된 경우에는 전액을 보전토록 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50%를 반환 또는 보전하도록 했습니다.

아홉 번째, 선거일 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소의 간판·현판·현수막 각 1개 이내 설치,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 선임, 명함형인쇄물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관위 규칙에 따라 1회 인쇄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 번째, 정당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20회 이내의 신문광고와 TV 및 라디오를 이용하여 각 15회 이내의 방송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합동연설회 및 정당후보자 등에 의한 연설회는 폐지했습니다.

열두 번째,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답을 할 때 사회자는 1일 1인에 한하여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은 사회자를 1인 지정해서 그 하루 동안에는 교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후보자는 사회자 연설 시 차량과 별도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뜻은 현행법에는 후보자가 연설·대담 차량을 떠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안에는 차에서 사회자가 연설을 하는 동안에 후보자는 그 차로부터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열세 번째, 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선거기간 전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선거기간 중에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열네 번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전자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선관위는 인터넷상의 위법 게시물에 대한 삭제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여섯 번째,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열일곱 번째,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방식을 항목별 산정에서 총액 산정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안 되지만 논의한 끝에 현행대로 하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열여덟 번째, 선거비용은 1회 20만 원 이상 지출하는 경우 수표 등 자금의 추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금 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열아홉 번째, 선관위는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 조사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선거일 후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무 번째, 선관위는 선거비용을 주거나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계좌 개설내역, 통장원부 사본 등에 관한 자료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물한 번째, 정당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일간신문 등에 총 70회 이내의 신문광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물두 번째, 선거일 전 90일이 속하는 달의 첫날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정당은 1회 20분 이내에서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월 2회 이내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스물세 번째, 확대당직자회의를 폐지했습니다. 이 뜻은 현재 선거운동기간 중에 1회의 확대당직자회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폐지했다는 것입니다.

스물네 번째, 재·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을 현행 오후 6시까지에서 8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습니다.

스물다섯 번째,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된 자에 대해서는 반환 또는 보전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했습니다. 선거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반환하거나 국고로 보전했던 선거비용을 당선무효 이후에 다시 환수한다는 뜻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무효에 이르는 형의 확정 전에 의원직을 사직하는 경우 당해 선거구의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

록 했습니다.

스물일곱 번째, 기부행위는 현행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상시 금지하도록 하되, 친족에 대한 축·부의금품 제공 등의례적인 행위는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의례적인 행위”라는 말은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사실 거의 의례적인 행위도 허용 못하도록 했고, 축·부의금의 경우에는 친족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스물여덟 번째,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행위 시로부터 6개월로 했습니다.

스물아홉 번째, 선거법에 관한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경우에 한하여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벌금형 이하만을 선고한다는 뜻입니다.

보고 도중입니다마는 제가 제1심으로 한정했던가요?

아니지요? 잘못 되었지요?

○원희룡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요.

○천정배 위원 1심뿐만 아니라 제2심까지 포함입니다.

○원희룡 위원 대법원 확정까지……

○천정배 위원 선거법에 관해서 대법원은 어차피 출석이라는 것이 없으니깐요.

○원희룡 위원 2심까지도 아니고 아무튼 2심, 3심 모든 재판입니다.

○천정배 위원 예, 어쨌든 제한하지 않고 선거법에 관한 모든 재판에서, 모든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서른 번째,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 지출함으로써 인하여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기로 했습니다.

서른한 번째,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되는 형의 요건을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하고, 연대책임 대상에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지 아니했으나 후보자와 도모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 지출한 자를 포함하며, 당선 무효되는 선거범죄의 유형에 회계보고서의 허위 기재, 고의 누락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서른두 번째, 선관위 위원·직원은 종전에는 금품·향응 제공 선거범죄의 경우에만 증거물품 수거, 동행 및 출석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다른 선거범죄 일반에도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서른세 번째, 형사소송법에 의한 현행범 및 준현행범이 동행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서른네 번째, 경미한 금품수수 등에 있어서 기부 받은 자에 대하여는 현행 형벌을 부과하던 것을, 또는 현행은 처벌하지 않던 것을 받은 가액의 50배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서른다섯 번째, 선거범죄에 있어서 정당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을 확대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 뜻은 정당 또는 단체의 대표자라든가 일정 직위 이상의 고급간부가 선거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 정당 또는 단체 자체에도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서른여섯 번째, 선거범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사람의 신상보호를 위해서 조서나, 이것은 형사 수사를 위한 조서입니다. 조서, 기타 서류작성 시에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등 특정범죄신고자 등보호법의 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선거사무관계자 등 내부고발자로부터 선거범죄의 신고를 받은 선관위 또는 수사기관은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서른일곱 번째, 출판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서른여덟 번째, 선관위는 선거범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른아홉 번째로, 현행 허용되고 있는 어깨띠는 후보자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제한했습니다.

마흔 번째로, 두 사람 이상이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인사·연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마흔한 번째로,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의 선거기간을 14일로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 현행 17일로 되어 있는 것을 14일로 했기 때문에 선거운동기간이 3일 단축되는 것입니다.

마흔두 번째, 선거기간과 후보자등록기간을 분리해서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간 후보자등록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등록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현행은 그 기간이 일치되어 있어서 후보자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선거운동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등록기간을 좀 앞으로 당긴다는 뜻입니다.

마흔세 번째, 후보자등록 시에 국내 학력의 경우에는 정규 학력의 최종 학력증명서, 국외 학력의 경우에는 국내의 정규 학력에 준하는 과정의 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내 대학의 정규과정을 마친 자는 수학기간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흔네 번째, 선관위는 당해 선관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자의 통신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흔다섯 번째, 선관위원회는 후보자의 납세·전과·병역 등 기록을 제출받아 유권자에게 송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그 기록 자체를 송부한다는 뜻은 아니고 기록에 적혀진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유권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유권자가 후보자를 알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마흔여섯 번째, 회계문서 보관의무 위반 시 행위 시로부터 공소시효를 3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행법은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미 설명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범해진 범죄, 그 이후라는 것은 선거일 후에 범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그때로부터 6개월간 공소시효를 두기로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후 6개월이 되었다고 그래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공소시효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회계문서는 현행법상 선거 끝나고 3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그 회계문서를 3년 이내의 기간 중에 파기하거나 하는 경우에 그때로부터 3년 동안 처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 기간을 연장한다는 뜻입니다.

마흔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당해 구역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1년부터, 그 외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이 정하는 이외의 금품 등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마흔여덟 번째로, 언론기관의 출구조사는 잠정적으로 투표소로부터 100m 밖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잠정적으로”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는 뜻입니다. 투표소로부터 100m 떨어진 거리 밖에서 하도록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마흔아홉 번째, 회계보고서류를 선관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밖에도 선관위가 실무적 필요에 의하여 개정을 요청한 사항을 일부 반영키로 합의했습니다.

그 밖에 미합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선거권 연령의 문제입니다.

현행의 선거연령 20세를 인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의원의 정수 등 선거구획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아직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셋째로, 비례대표를 전국 명부로 할 것인지 권역별 명부를 작성해서 뽑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비례대표 의원이 제명되어서 당적을 이탈하는 경우, 또는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와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된 후 1년 이내에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여성전용선거구를 설치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단축할 것인지의 여부, 현행은 선거기간 중에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거일 전 7일 전까지는 공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문제에 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지금 유인물에는 일곱째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비리로 인하여 형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무원임권을 제한하자는 안을 李在五 위원장께서 소위에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소위 차원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합의 사항이 아니라 아직 토의를 시작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잘못 기재되었거나 하는 부분……

유시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유시민 위원** 아까 천정배 간사님께서도 보고 중 말씀을 하셨습니까마는 2쪽 인터넷 실명제 도입 문제에 관해서…… 이것이 너무 사안이 많아서 정리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추후 결정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실현가능성 문제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한번 만들어 오면 그것을 본 후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 사항을 더 마련해서 논의를 다시 하기로 한 것입니까?

○**유시민 위원** 그렇지요.

4쪽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이 대목은 아마도 후보자가 아닌, 다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확인하는 겁니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저만 잘 모르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예비후보자는 120일 전부터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도록 이미 허용했는데 이 규정은 왜 이렇게 선거운동 기간에만 따로 또 규정을 두었는지 그 점이 의문스럽고, 그다음에 6쪽의 “스물세 번째, 확대당직자회의를 폐지하며” 이것은 저희가 합의한 것인데 만약 지구당을 폐지하기로 한 정당법 소위의 합의에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부터 지구당이 없어진다면 확대당직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연동해서 나중에 처리되어야 될 것임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쪽 미합의 사항 가운데 “여섯째,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일 전 7일 전으로 단축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이것이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제 기억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마지막 질의부터 답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합의가 이루어졌었는데 뒤에 다른 고려사항이 생겨서 미합의 처리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4페이지 열네 번째에 관해서는 저도 기억은 뚜렷치 않습니다마는 앞부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하되” 여기까지는 맞는 것이지요? 앞부분은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委員長 李在五** 유시민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후보자 자신을 말하느냐, 다른 사람이나 그 말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상시 허용하기 때문에 후보자라는 개념이 그때는 없지 않습니까?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국민이 다 할 수 있게 되는 꼴이 된 것이지요. 이를테면……

○**원희룡 위원** 자기에 관한 선거운동만 할 수 있지 남의 선거운동은 못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렇지요. 그 사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자기 운동을 한다는 뜻이지요.

○**원희룡 위원** 원래의 취지로 후보가 되려는 자, 예비후보자 이렇게 정해 주면 되겠지요.

○**정장선 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니까 애매모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원희룡 위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의 취지가 모든 국민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후보자·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자신이 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상시 할 수 있다, 이것이 정확한 취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단의 경우 “전자메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허용하고” 이 부분은……

○**원희룡 위원** 이것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천정배 위원** 예비후보자 등록 이후부터 선거일까지 그 기간 중에 허용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기간”이란 말은 본선거운동기

간만을 뜻하는 걸로 지금 적혀져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더 확장해서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유시민 위원** 그거라면 아홉 번째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열네 번째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요. 나중에 이걸 그 취지로 다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위원** 예, 열네 번째는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다 정리됐나요?

○**유시민 위원** 예.

○**委員長 李在五**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지요.

○**원희룡 위원** 예, 우선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어저께 진행된 심사결과를 지금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다시 논쟁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인 방안과 범조문까지 상당 부분이 지금 제시가 돼 가지고 법사위에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아직 최종 결론에는 도달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의견은 많이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표현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 보고서 열아홉 번째 보면 “선관위는 선거비용 수입·지출에 관한 확인·조사를 상시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에 대한 조사는 선거일 후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후보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고 후보자에 대한 동행요구는 선거운동기간이 짧은 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소환 또는 동행요구는 선거일 후에 하라는 것이 그 외 방법의 조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표현을 정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마흔여섯 번째 “회계문서 보관의무 위반 시 행위 시로부터 공소시효를 3년으로 하며” 그랬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 취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계문서 보관의무가 3년이니깐 일찍 없애버릴수록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 가지고 결국 3년 동안 보관 안 한 것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는 현행 법규의 미비점을 고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다른 선거법위반행위들은 모두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6개월간입니다. 그런데 이것만 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3

년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게 내용적인 토론이 되겠습니다마는 더 좋은 기술적인 방법이 없겠는가,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52조(시효의 기산점) 조항을 보니까 “시효는 범죄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관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3년 동안에는 보관의무 위반이 있고 만약에 일찍 없었다 하더라도 그 범죄행위의 종료가 3년째 이루어지는 걸로, 의무기간이 끝나야 종료되는 걸로 봐서 그때부터 6개월 하면 실제로는 선거일로부터 3년 6개월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이 건 나중에…… 물론 이게 합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검토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의견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또 말씀하실 분 하시지요.

○**권영세 위원** 원희룡 위원께서 얘기하신 공소시효 기산방법은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내용부분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는데, 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서 공소시효 진행이 지금 그러면 6년이 돼야 된다는 건……

○**委員長 李在五** 내용은 토론시간에 하시고 우선 이 보고서에서 잘못 기재됐다고 생각하는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金聖順 委員** 한 가지만 확인하겠는데요, 열여섯 번째 보면 “의정활동보고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도록 하고” 그랬는데 의정활동보고 자체를 금지하는 겁니까, 의정활동보고회를 금지하는 겁니까?

○**천정배 위원** 보통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의원이 의정보고회를 열어서 사람을 모아서 보고하는 것도 금지되는 건 물론이고, 의정보고서라든가 그밖에 여러 가지 통신의 방법으로 의정보고 내용을 남을 시키든지 자기가 하든지 전달하는 것도 금지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체의 의정보고활동이 금지됩니다.

○**金聖順 委員** 그러면 아홉 번째 “명함형인쇄물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관위 규칙에 따라 인쇄물 발송” 그랬는데 선관위 규칙이 뭔지 모르지만 이 근거로 해서 발송할 수 없습니까?

○**천정배 위원** 이 건 그러니까 예비후보자는 현역 의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읽을 때 ‘1회’라고 첨가해서 읽었습니

다. 그러니까 선관위 규칙에 따른 그 홍보물을 1회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의원이나 의원 아닌 사람이나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의원인 경우에 90일 이전까지는 의정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90일 이전이 지난 이후에는 의정보고 자체가 일체 금지됩니다.

○**金聖順 委員** 그게 앞하고 모순되는 게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모순되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의정보고라는 방식으로는 금지되지만 선관위 규칙에 따라 1회 홍보물 발송하는 것은 허용되는 겁니다. 이 건 의정보고 정도가 아니라 선거홍보물입니다. 의정보고에는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지만 “나를 지지해 주십시오” 하는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홍보물은 아예 노골적인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선거홍보물을 1회에 걸쳐서 누구든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委員長 李在五** 또 말씀하실 분 하시지요.

○**정의화 위원** 1페이지의 “선거부정감시단” 이 건 물론 각 지역선거구별로 하는 것이지요? 여기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문맥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따르는 국비 예산지원관계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게 완전히 자원봉사로만은 되지 않을 텐데요. 일당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이 건 일단 예산이 따라야 되는 그런 일 같은데 말이지요.

○**천정배 위원** 현행도 선거부정감시단이 있습니다. 현행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의화 위원** 만약에 돈을 지불하지 않아서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우리가 법에서 이렇게 50명으로 해 놓은들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지원 없이 이것이 가능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의문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의정보고서 관계에서 지금 제 홈페이지의 경우에 의정보고서가 그대로 수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선거일 전 90일 되면 그걸 다 삭제해 해야 되는 것인지……

○**천정배 위원**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그게 더 우선 적용되겠지요.

○**委員長 李在五** 수석전문위원, 선거부정감시단

예산문제 설명 좀 해 보시지요.

○**首席專門委員 李昌熙** 예, 선거부정감시단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선거기간 개시일 10일 전부터 해서 토달 27일간 50명씩 해 가지고 약 168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부정감시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게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위임해 가지고 선거사무종사자 지급에 관한 수준으로 한다 해 가지고 약 4만 원씩 해 가지고 요 앞의 대선 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의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을 안 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아마 추정에서 그걸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상당히 늘어날 겁니다. 27일 50명에 약 170억이 들었는데 지금 기간이 150일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은 다섯 배 이상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또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천정배 간사님, 9페이지 서른아홉 번째 어깨띠는 후보자에 한해서 허용하게 되어 있고, 마흔 번째 2인 이상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인사·연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인 이상 무리를 지어 행진할 때 인사·연호만 제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개 선거 때 보면 지하철역이나 다중이 다니는 장소에서 20명씩 죽 서서 1번 누구입니다 하는 것도 제한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제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정배 위원** 다 제한하는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줄지어서 인사하는 것을 전부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여기에 ‘행진하거나’ 이렇게 해 놓으면 행진할 때만 제한하는 것으로……

○**원희룡 위원** 행진행위 금지, 인사행위 금지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이라는 것이 앞의 부분뿐만 아니라 인사·연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까지 다 금지되는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나중에 다시 다른 의

견의 제시나 토론할 시간이 있는 것이지요?

○**委員長 李在五** 그렇습니다.

선거법소위원회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대학부재자투표운동본부에서 직접 3장의 문건을 받았습시다마는 이것을 선거법소위원회에 넘겨드릴 테니까 다음에 검토하실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위원** 2000명 이상 대학, 공단 또는 시설의 경우에 선관위의 허가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이 문건을 드릴 테니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십시오.

3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보고받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미리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委員長 李在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부된 자료 중에 기재가 잘못된 것을 포함해서 토론해 주시고 토론에 대한 응답은 주로 간사님들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위원** 아까 보고한 대로 정치자금법에 대한 토론을 끝내고 그다음 정당법, 선거법을 하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정치자금법에 대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것을 먼저 정정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별도자료인 정치자금법소위원회 회의결과 5페이지를 보면 맨 아래에 ‘고액기부자 명단공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나라당 연간 100만 원, 민주당 연간 500만 원, 열린우리당 연간 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500만 원 초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한도액이기 때문에 전체를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연간 500만 원, 연간 500만 원을 삭제하면 그냥 1회 50만 원 초과 기부자, 1회 100만 원 초과 기부자, 1회 100만 원 초과 기부자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무슨 말씀이나 하면 연간 500만 원, 연간 100만 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1회 50만 원 초과할 때 기부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오해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한도액과 관계

없이 무조건 1회 50만 원 이상은 공개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정장선 위원 예,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1회 50만 원 초과, 그다음 두 당에서 는 1회 100만 원 초과가 원래 당론인데 앞에 연간 100만 원, 연간 500만 원으로 하면 마치 연간 500만 원 이상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100만 원, 500만 원을 삭제하면 무리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것입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50만 원 초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00만 원 초과로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연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좋습니다.

그렇게 정정하시고요.

○정장선 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또 한 가지 여기 1회, 1회, 1회도 아니고 그냥 50만 원 초과, 100만 원 초과, 100만 원 초과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그것이 1년에 50만 원인지 막연하잖아요?

○정장선 위원 아니요, 저희 당에서는 기부액 한도가 연간 500만 원이고 한나라당은 연간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간 100만 원이 초과될 경우 공개를 한다는 개념입니다. 몇 회 나누어서 내든 연간 10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회가 아니라 여기에서 삭제해야 될 것이, 저희 당을 예를 들면 ‘연간 500만 원’도 삭제할 뿐만 아니라 ‘1회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초과’의 경우입니다.

○심규철 위원 연간 100만 원 초과의 경우에는 무조건 공개하는 것으로……

○정장선 위원 예.

○委員長 李在五 한나라당은……

○정장선 위원 한나라당은 ‘연간 50만 원 초과’……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이것이 1회가 아니고 연간이군요?

○정장선 위원 예.

○委員長 李在五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료를 정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치자금법소위에서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지금부터 토론하겠습니다. 답변은 정장선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가급적 4당이 소위에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 주시고 다른 소위에 참석했던 위원님들이 합의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서 다시 토론하자면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문제점만 제기해 주시면 해당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심규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철 위원 모금한도에 관해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인이 후원할 수 있는 한도를 연간 500만 원으로 제한한 것입니까?

○정장선 위원 그것이 지금 미합의 부분입니다.

○심규철 위원 그러면 국회의원과 예비후보자의 경우 후원회의 전체 모금한도는 1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정장선 위원 예.

○심규철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이상 모금해 본 적도 없긴 합니다마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국회의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큰 정치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냥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도 있는데 이것을 획일적으로 1억 5000만 원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되면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을 다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엄격히 제한하고 또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 기부하는 사람은 공개하기로 하는 제한을 둔다면 모금한도를 차라리 없애면 어떻습니까?

○김성호 위원 좋습니다.

○심규철 위원 그래야 범법자를 만들어 내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해 김근태 선배도 이런 곤욕을 치렀습니다마는 저는 왜 1억 5000만 원의 한도로 이것을 제한해야 하는지 합리적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심 위원님, 토론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안만 해 주시면 정치자금법소위에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심규철 위원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유시민 위원 심규철 위원님, 다음 것을 하기 전에 한 마디만 덧붙여서 저도 같이 제안하면 안 되겠습니까? 같은 내용입니다.

○심규철 위원 그러면 하지요.

○유시민 위원 만약 심규철 위원님의 제안이 받

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당 지도부 경선이나 혹은 도지사 이상, 대통령후보 경선에 나가는 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큰 정치를 하는 분들이 범법자가 안 되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심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도 잘 하려면 이것 이상으로 돈이 듭니다. 국회 관련법에 정책세미나나 정책심포지엄을 할 때 실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함께 강구되어야 된다는 점을 제안드립니다.

○심규철 위원 제가 국회의원 활동을 4년밖에 안 했습니다마는 해 보니까 사실 활발하게 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합법적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쪼쪼맬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저도 의정보고서를 만드는데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조달해야 될 입장입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당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후원회의 모금방법입니다.

지금 집회방식의 후원금 모금방법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지난 가을 후원회할 때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 중에 후원금을 안 내고 식사한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집회방법의 후원회를 허용하면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것 같아요.

특히 지역구가 시골인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집회방법의 후원회를 아예 허용하지 말든가, 허용한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집회방법의 모금방법을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폐단이 많습니다. 어느 의원은 국정감사할 때도 후원회를 열어서 의원들 다 동원시키기도 하고 또 국회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을 때 하면 우르르 다 몰려가서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구에서 올라온 분들에게 식사제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 중에는 후원금을 안 내고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엄격히 따지면 문제가 되지요.

○천정배 위원 이제는 후원금을 내더라도 밥 못 주게 했습니다.

○심규철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후원회에 와서 그냥 돌아가게 하는 것

이 시골 국회의원들의 정서에는 안 맞습니다. 만약 이대로 둔다면 시골이 지역구인 국회의원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밥 안 주고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집회방법에 의한 후원회를 아예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장선 위원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의 한도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투명한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음성자금을 막는 것이 초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액다수로 해서 투명하게 모으는 것은 터주고 그 한도를 굳이 둘 필요가 있느냐라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는 개인후원회 자체를 아예 하지 말자고 했던 상황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고집을 하셔서 이것을 저희가 수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집회 부분에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후원금에 대해 가령 50만 원 이상은 전부 수표로 하게 하는 등 굉장히 엄격히 제한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후원회를 마치 의정보고회 형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대개 그렇게 이용해 왔었습니다.

반면에 다음에 들어올 때는 신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해 버리면 매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해서 5만 원만 도와 달라, 10만 원만 도와 달라, 이렇게 되면 의정활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논의를 좀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저도 사실 심규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투명하지 못 하거나 부정한 정치자금 문제가 되었던 것이지 후원금 자체 상한액이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도 후원금을 걷을 때 깨끗하고 투명하게 걷고 그 돈이 공개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억 5000만 원은 현실적으로 단 순히 국회의원선거뿐만 아니라 당내 여러 가지 선거에 나가려는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범법자로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것을 정치자금법소위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후원회의 경우 사람을 동원하는데 차량을 제공한다거나 음식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원회는 순수한 후원자들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도 밥값을 다 각자 냅니다. 국회의원이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값 자체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직접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한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연장선상에서 집회에 의한 후원회 자체를 막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원회를 할 때 사람들이 자기가 후원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듣고 난 다음에 돈을 내고 싶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대면도 한번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터넷을 통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회에 의한 후원회가 원칙이고 인터넷은 보조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집회에 의한 후원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만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장선 위원**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지출이 굉장히 엄격하게 통제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같이 뷔페를 차리고 차량을 동원한 것이 후원금을 통해서 다시 역으로 나가는 것들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할 경우 상당히 후유증도 예상됩니다. 널리 알려진 정치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다음에 진출하는 정치 초년병들은, 특히 무명인사일 경우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나중에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리고 정치자금법소위에서는 타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기록하셨다가 마지막 소위 하실 때 토론해 주십시오.

○**정장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다음 천정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모든 후원회는 기업·법인·단체 후원을 금지하고 개인만 후원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법인, 단체, 임직원이나

가족이 기업 등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합의했다고 했는데 그 합의의 정신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결국 회사는 후원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회사 돈을 가지고 그 회사의 간부나 누구를 시켜서 개인이 낸 것처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후원이 금지된 법인이 후원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다.

예컨대 회사가 자기 대표이사나 이사를 시켜서 마치 개인 후원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또 직원을 심부름시킬 수도 있고 가족을 시킬 수도 있고 전혀 영똥한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임직원이나 가족으로 범위를 한정해서 규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후원을 할 수 없도록 분명하게 규정하고 또 법인이 임직원이든 누구든 마치 개인이 한 것처럼 가장해서 후원하는 경우를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으로 완전히 금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것은 무의미한 논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천정배 위원님 의견도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제가 곁들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나 법인, 단체의 후원은 안 되고 기업, 법인, 단체의 임직원 및 그 가족이 기업 등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업이 편법으로 제3자를 통해서 후원을 할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금지시키려면 10만 원 이상은 무조건 수표로 한다든지, 추적할 수 있는 돈으로 후원하게 해 놓아야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실제로 알 수가 있지 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면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잖아요.

○**천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법인은 절대적으로 후원금을 금지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A라는 회사가 어떤 정치인한테 후원금을 주기 위해 회사의 임원이나 누가 돈을 내면서 이것은 A 주식회사에서 주는 후원금이니 영수증 써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법

에 금지되어 있으니 해당 정치인 후원회에서 받을 리 없겠지요. 받으면 처벌되니까 못 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면탈하기 위해 A 주식회사가 임원이나 직원, 가족 등 누가 되었든 간에 개인을 내세워 100만 원을 주면서 당신이 가서 홍길동이라는 정치인한테 후원을 하되 우리 주식회사 이름은 말하지 말고 당신 이름으로 하시오,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자기 명의로 주니까, 홍길동이면 홍길동 명의로 주기 때문에 홍길동이 주는가보다 하고 받아서 처리했기 때문에 받는 후원회 관계자는 개인한테 받은 것이 되고 영수증도 홍길동 개인 앞으로 끊어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발되지 않으면 넘어가겠지요. 그런데 혹시 후에 문제가 되어서 그 100만 원 자금의 출처는 A주식회사였다는 것이 수사 결과 밝혀지면 A주식회사는 법에 금지된 법인명의의 후원을 했기 때문에 주식회사 관계자가 처벌될 것이고 심부름을 한 홍길동이라는 사람도 자기 돈으로 낸 것이 아니라 법에 금지된 법인의 자금으로 냈기 때문에 처벌될 것입니다. 그렇게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설명이 되었습니까?

○**委員長 李在五** 예.

○**김성호 위원** 제가 보기에 '모든 후원회는 기업 및 법인·단체의 후원을 금지한다'는 이 조항에 이 원칙이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또 법인·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하든 아니면 제3자를 시켜서 하든 원천적으로 안 된다는 것이 앞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심규철 위원 말씀하세요.

○**심규철 위원** 저는 이 조항에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부작용을 더 많이 낳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투명하지 못한 자금이 기업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내도록 하는 장치를 만든다면 지금 예상하시는 부작용을 오히려 없애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이 떳떳하게 깨끗한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아예 원천

봉쇄하면 탈법이 생깁니다. 범법자가 많이 양산될 법을 왜 만듭니까?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여러 가지로 강구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 속에서 기업 및 법인·단체도 후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는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원희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희룡 위원** 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 후원회 모금액을 환수하는 것을 합의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자신이 모았던 금액 전부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내놓을 자기 돈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선까지 나가야 되는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보 난립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법에서 금지시킨 경우에는 미사용 잔액만 내놓으라고 한 것과 균형을 맞춰서 미사용 잔액을 회수하도록 하고 다른 하나는 예비후보자는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사용 잔액을 불려서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료 4페이지를 보니까 새로 처벌조항을 만들면서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에 지출한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후원회로 모금한 돈을 가계자금으로 썼다 또는 자녀에 대한 교육비에 지출했다 아니면 제세공과금을 내는 데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입니까?

○**정장선 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원희룡 위원** 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정치자금을 사적 경비로 지출한 자에 대해서 5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 놓았거든요.

○**정장선 위원** 정치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사적으로 쓰는 것 있지 않습니까? 땅을 사거나 개인 경비로 쓰거나 이랬을 경우의 처벌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그러니까 법조문을 '사적 경비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장선 위원** 사적 경비가 아니라 아까 바꿨습

니다. 사적 경비나 부정한 용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외의 용도로 지출했을 경우로 바꿨습니다.

○**김성호 위원** 현재도 그렇게 처벌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정장선 위원** 신설 조항입니다.

○**김성호 위원** 신설 조항이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현재도 정치자금법에 의하면 정치활동에 관련된 부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정장선 위원** 지금은 없어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호 위원** 정치자금 몇 %는 정책관련해서 써야 되고……

○**委員長 李在五** 그것은 법에는 없고 정당 내부 규정에 있습니다.

정장선 위원님, 2페이지에 보면 후원회 모금한도가 1억 5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해서 후원금 1억 5000만 원을 모았는데 공천도 못 받고 등록도 안 해버리면 그 돈은…… 예비후보자라고 해 놓고 후원회해서 돈만 모아놓고 출마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요?

○**원희룡 위원** 미사용 잔액 회수가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정장선 위원**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1억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억 5000만 원을 모았다고 가정했을 때 잘못하면 돈을 마구 남발해서 돈 선거가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사무실 임대라든지 현수막을 걸거나 사람을 한두 명 쓰는 경비, 그러니까 자기가 활동한 부분 이외의 것은 전부 환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 생각인데 예비후보자가 국회의원 출마할 것을 전제로 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출마를 안 했으면 모은 돈 전부 다 내놓아야지요.

○**천정배 위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국회의원 출마하려고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후원금을 거두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당선 가능성도 전혀 없고 이런 저런 이유로 등록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출마할 생각으로 후원금을 걷었는데 포기한 사람의 경우에 그동안 쓴 돈까지 내라고 하면 그것도 가혹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니까 출마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생각을 잘하고 해야지요. 돈만 모아놓고 출마도 안 하고……

○**천정배 위원** 후원금이 국고지원금이라면 전액 환수하는 것이 맞지만 후원금이라는 것은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친구든 지역구 누구든 간에 후원금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출마할 가망도 없고 출마한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면 후원금이 안 들어오겠지요. 그렇게 시장 기능에 맡겨야지 일단 쓴 돈을 토해내라고 하면 선의로 출마하려고 했다가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장선 위원** 전문위원님, 조문정리는 어떻게 됩니까?

○**專門委員 安秉玉** 조문정리할 때는 미사용 잔액으로 될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거운동할 수 있는 항목이 제한되어 있고 증빙서류를 전부 붙여야 되기 때문에 허위 회계하는 부분은 그 법 위반으로 다시 처벌되는 것이고 모금액 전액을 환수한다면 후보자들이 열심히 모아놓으면 나중에 국가가 끌궂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사용 잔액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委員長 李在五** 미사용 잔액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이것이에요.

○**원희룡 위원** 자기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입증 자료를 못 내는 부분은 전부 미사용 잔액으로 간주하는 것이지요.

○**정장선 위원** 앞으로는 선관위에 계좌가 개설되어서 그 계좌를 통해서 다 지출됩니다. 영수증을 다 첨부해야 됩니다.

○**委員長 李在五** 이것은 합의 안 된 사항이지요?

○**정장선 위원**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입니다.

○**원희룡 위원** 모금액 환수로 합의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정장선 위원** 합의는 된 것인데 아까……

그러니까 미사용 잔액으로 합의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다 확인하느냐고 하지만 앞으로는

후원금이 들어오면 지출은 단일계좌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수증을 통해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후원금을 막 쓰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예비후보자의 경우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 모은 것을 본인이 갖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놓아요.

○**정장선 위원** 앞으로 후원금을 기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겨 놓고 내가 출마하려고 했는데 못 하겠다 그러면 통장에서 나간 부분만 빼고 나머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환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돈을 맡기면 영수증 다 만들지요.

○**정장선 위원** 전문위원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용 후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에서 ‘사용’이라는 것은 미사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專門委員 安秉玉** 예, 미사용입니다.

○**정장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당내 경선 낙선의 경우에는 미사용 잔액을 환수하도록 하고’라는 별도의 조항이 필요 없잖아요? 당내 경선 낙선의 경우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게 되기 때문에 미사용만 환수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에는 나갈 수 있는데 자의적 이유로 안 나가기 때문에 모금액 잔액을 원천적으로 다 환수해야 되는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비후보자 미사용 분을 환수한다고 하면 당내 경선 조항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專門委員 安秉玉** 당내 경선의 경우 후원회 설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되었습니다.

○**정장선 위원** 아니지요. 후원회는 전체가 포함되지요. 당내 경선한다고 당내 경선 후원회를 별도로 하도록 이중으로 될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천정배 위원**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아예 출마가 금지된 것 아닙니까? 그것과 연계시킨다면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순간 이미 출마 안 하는 것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비후보자 아니에요? 똑 같은데 표현을 구분했을 뿐이지요.

○**원희룡 위원** 어차피 뜻은 접근이 된 것이니까 조문 정리를 해 주시지요.

○**委員長 李在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주십시오.

○**원희룡 위원** 관련 사항인데 예비후보자 등록 시 등록서류 중 벌금형 이상의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조항을 정치자금법에 넣는 것으로 합의하신 모양인데 물론 체계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선거법에 벌금 이상뿐만 아니라 재산·학력 등 모든 서류를 예비후보자 때 이미 내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정치자금법에서 벌금형 이상 전과기록을 제출하라는 근거규정을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在五** 그것은 선거법하고 합치면 안 돼요?

○**천정배 위원** 나중에 정리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문제점만 지적하고 나중에 정리하도록 합시다.

정의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의화 위원** 당내 경선 시 낙선했을 때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합의되었다고 해서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것은 정치자금법이 아니잖아요?

○**정의화 위원** 후원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 의견만 내겠습니다.

당내 경선을 저도 여러 번 해 보았는데 100% 공명정대하게 한다는 전제가 되지 않고 이런 조항을 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천 위원님이 이야기한 예비후보자의 후원금과 관련해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10만 원 이하의 소득 세액공제를 해 주게 되어 있던 말이지요. 세금 부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이것이 예비후보자를 양산하면서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빼돌리고 국고는 많이 줄어서 국민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후원회와 관련한 미합의 부분인데 중앙당 시지부 후원회를 우리 한나라당에서 폐지를 주장하는데 당비 문제는 다 낼 수 있는 것이지요? 후원금과 당비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앞으로 중앙당과 시·도지부를 슬림화하자는 정치 개혁 취지에 맞추어 본다면 폐지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후원회 모금 방법에 있어서 아까 식

사 문제가 나왔는데 이 식사 문제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처럼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상한선을 없애자는 이야기도 사실 들어오는 것을 소액 다수로 공정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 의원의 역량에 따라 상한을 두지 않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때는 두 배로 하고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말들은 우스운 것들입니다. 이것은 불신을 전제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 맞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아까 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멀리서 왔든 가까이에서 왔든 식사 한 끼 대접해서 보내는 것은 우리 정서에 맞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누가 후원금을 2만 원을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1만 원은 식비이고 1만 원은 후원금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이 사람에게 식비 1만 원 봉투를 따로 내라고 할 수는 현실적으로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원금 범위 내에서 식사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5만 원 내면 4만 원은 후원금으로 하고 1만 원은 식비로 따로 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 그러나 그것이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를 5000원이면 5000원, 7000원이면 7000원으로 정해서 최소한 허기는 면하고 갈 수 있는 정도로 고려해 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정배 위원** 후원회에 온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있게 하자는 문제는 오늘 충분한 설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선거법소위에서는 정치를 하는 한 어떤 돈도 못 쓰게 전면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1억 5000만 원까지 후원금을 걷는 것하고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의정활동을 위해서 확실하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마는 현재 정해진 바로는 연 1억 5000만 원의 후원금을 걷는 것 이외에는 어떤 돈도 더 받을 수 없고 반면에 쓸 일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경조사에 축의·부의금을 대신하던 향축세트 이런 것도 전면 금지했거든요.

그동안의 관행이나 우리 사회 풍속이나 이런 데 비추어서 자연스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제 말씀은 후원회만 독립해서 밥을 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집회에 의한 후원방식을 논의할 때도 그런 생

각을 했습니다마는 집회라는 것이 두 가지 형태의 집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의원하고 구별되는 후원회가 따로 있지요. 후원회장이 따로 계시는데 그 후원회가 회원들한테 초청장을 보내서 다 모여라 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밥 먹이고 후원금 건어서 경비 빼고 나머지를 해당 정치인에게 넘기는 방식의 집회가 있는가 하면 거꾸로 선진국에서는 후원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집회를 해서 참가비 형태의 돈을 모아서 밥 먹는다든가 경비를 빼고 나머지를 정치인한테 넘기는 방식, 그러니까 전자는 하향식 집회라면 후자는 상향식 집회라고 할까요. 이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식에서는 어떻게 모르겠는데 두 번째 방식은 앞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후원금을 2만 원 가지고 와서 식비나 경비로 1만 원 쓰고 나머지 1만 원을 해당 정치인에게 주겠다는 형태의 집회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히려 조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관해서 정당법소위에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의화 위원** 참고해 주시라는 말씀이고 문제는 예식장에 빈 봉투 가져와서 거꾸로 받아 가는 식으로 후원회를 빙자해서 후원이 아닌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른 방법으로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비를 1만 원으로 정한다 그러면 1만 원 이상 후원금 가져온 사람에게는 식사 대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 제가 다음 회의에 참석 못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향축이나 앨범도 못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이것은 대한민국 국회의원을 다 범법하게 하는 전제 아래 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못하게 하라는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을 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다, 음성적인 일들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구의원이나 시의원이나 우리 지역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문화로 보아 최소한의 인사치레는 해서 국회의원도 사람 구실을 하게 해 주어야지 국회의원이었다 해서 그것도 안 된다 했을 때 받을 역풍과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논의를 생산적으로 하십시오.
정장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장선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소위에서 계속 논의가 진행되었던 문제입니다. 1억 5000만 원의 한도를 두는 문제, 집회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가 전향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한나라당에서 당론이라면서 일체 못 박아서 후퇴할 수 없다고 고집해 왔습니다.

오늘 한나라당 위원님들이 많이 제기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나라당에서 모금 상한액은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것인지와 한나라당은 집회를 일체 하지 말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논의하셔서 당론을 저희에게 제시해야 논의가 되지 무조건 당론이라고 안 된다 해서 논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처음에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소위에서 합의해 놓은 것을 원천적으로 뒤엎으려고 하지 말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개진해 주면 다시 소위에서 마지막 정리할 때 그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보자는 것입니다.

○**정장선 위원** 미합의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당론이기 때문에 절대 못 한다 계속 그래 왔기 때문에 당론을 재조정해서 오셔야 논의가 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정치자금에 관한 토론은 마치고 정당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천정배 위원** 보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 지구당 폐지에 따라서 시·도지부를 법정 당부화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각 정당이 자율적으로 시·도지부를 두는 것까지 우리가 금지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법정 당부화 하시겠다는 뜻은 시·도지부를 5개 이상 설치하고 시·도당이라고 표현을 바꾸었는데 각 시·도당마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중앙당을 창당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지요?

○**金聖順 委員** 예.

○**천정배 위원** 그런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각 당이 자율적으로 시·도당을 두고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집해서 소속하게 하는 것이야 막을 필요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시·

도지부를 결성하라고 법으로 강제해서 법정 당부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구당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현행법에 시·도지부는 안 만들어도 되지만 지구당을 23개 이상, 몇 개 시·도에 분산해서 한 지구당에 당원 몇 명을 모아야 중앙당을 창당하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면 될 일이지요.

어떤 정당의 경우 우리는 중앙당만 두고 전국적인 정당 활동을 하겠다 하는 정당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굳이 법으로 '너희는 안 된다'고 금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덧붙여서 저도 같은 의견인데 지구당을 완전히 없었는데 그러면 중앙당 창당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시·도지부를 둔다는 것은 지구당을 두는 것과 똑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지구당 폐지는 시·도지부도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하고 중앙당 창당 요건에 관한 당원은 중앙당 차원에서만 이야기를 해야지 지구당을 폐지하는데 시·도지부를 둘 이유가 없지요. 의견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시민 위원** 문제를 분리해서 보아야 되는데 왜 이 규정을 두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중앙당이 자체로서 성립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정당이 난립하게 될 것입니다. 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거든요. 예전에 5개 이상의 광역시·도에 걸쳐서 23개 이상의 지구당을 만들어야만 중앙당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당을 만들기가 어려웠지요.

○**金聖順 委員** 인원으로 보면 강화되었고 절차로 보면 완화된 것입니다.

○**유시민 위원** 그래서 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시·도당을 못하도록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면 당원 관리를 몽땅 중앙당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중앙당의 유급직원은 100명 이하로 묶어 놓으면 누가 당원 관리를 하며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지구당을 없애는 데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된 것이니까 받아들이는데 지구당의 폐해가 너무 심각했고 지구당이 사실상 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사조직으로 기능해 왔으며 또 돈 선거의 주된 통로였기 때문에 없애는 것이거든요. 도당은 그렇게 될 우려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시·도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율적인 정당 활동을 가로막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살려 놓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정배 위원** 정당 창당을 너무 쉽게 해서 난립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꼭 시·도당을 법정 지구당화 할 필요는 없고 예컨대 똑 같은 요건으로 5개 시·도에 걸쳐서 각 시·도별로 1000명 이상의 거주자를 중심으로 당원을 모을 때만 중앙당을 창당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시·도지부를 법정 지구당화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시·도지부를 못 만들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유시민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당원을 관리하고 최소한 정당으로서의 행정적인 활동도 필요할 텐데 그것을 중앙당에서 전국을 다 일괄적으로 하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시·도지부를 만드는 것 자체는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도지부를 만들라고 또는 폐지하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되 그냥 각 정당의 자율에 맡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중앙당 설립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천정배 위원** 중앙당 설립 요건으로는 시·도지부를 조직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을 둔 주민별로 따져서 시·도지부 5개 시·도에 걸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이 확보된 순간에 중앙당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金聖順 위원님 말씀하세요.

○**金聖順 委員** 요건이 강했던 것을 좀 완화한 것인데 다 없애고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아까 유시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단계를 거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당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지구당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폭 완화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난립하는 것도 막아야 하지만 당원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중앙당에서만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초점은 제일 폐해가 많은 것이 지구당이기 때문에 지구당을 폐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러면 정당법에 대해서는 다른 토론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제 제일 논의가 많아질 선거법소위 보고

내용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지요.

의문점은 보고할 때 말씀드렸으니까 의견만 개진해 주십시오.

○**심규철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의정활동 보고가 그동안 문자 그대로의 의정활동 보고라기 보다는 선거운동적인 기능으로 활용되어 온 면을 반성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 의정활동 보고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같은 농촌지역을 예로 든다면, 지금 지역구 활동을 할 때마다 농민들의 침예한 문제가 FTA입니다. 물론 가는 데마다 일일이 설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FTA에 관해서 시간이 허용되고 여건이 허용되면, 지금 왜 농촌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것을 물리적으로 방해하고 있느냐 그 상황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불러모아 놓고 한번 설명하고 싶은 충동도 느끼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상 서울에만 있는 관계로 그것을 못 합니다만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2월에 처리된다는데 1월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이 선거일 전 70일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못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안 통과가 12월 말에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싶습니다만 비용이 많이 드는 관계로 1년에 한 번 의정보고서를 냅니다. 12월 말에 예산안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서 여러 가지 예산 관련 의정보고서를 만들다 보면 그 준비기간이 한 20일 정도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만들어도 보름 걸리거든요. 90일 전부터라면 금년을 기준으로 해서 1월 18일 경인데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발송하는 시간이 너무 빠듯합니다.

합법적인 의정활동 보고마저도 이렇게 기간을 촉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선거운동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를 살리면서 제대로 된 의정활동 보고도 허용하려면 한 60일 정도가 어떻겠는가 하는 의견인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聖順 委員**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유권자들이 뭘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많은 것 중에 의정활동을 지난 4년 동안 잘 해 왔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판단자료인데 그것을 90일 전부터 금한다, 그러면 90일 전에 국회의원 신분이 끝납니까? 국회의원이 활동을 안 합니까?

새로 입문하는 사람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한 것을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나는 그런 것 할 게 있잖아요, 새로 하는 사람들은 없고.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구태여 균형을 맞추려면, 신인들도 하라 이거예요.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의정보고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소개서를 자세히 쓰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써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해서 균형을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국회의원에게 90일 전부터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희생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나, 이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선거공영제는 논의를 안 했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것은 완전선거공영제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워낙 당연한 것으로 봐서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조문에는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천정배 위원** 법정 선거운동비용에 관한 한, 기탁금의 반환요건이 15% 이상 득표하거나 당선된 후보는 100% 반환해 주고 10% 이상 득표하고 15% 미만 득표한 후보에 대해서는 절반을 보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후보에 대해서는 자기 돈을 쓸 수밖에 없으니까 선거공영제가 적용이 안 되는 것이고, 10~15% 사이를 득표한 후보에 대해서는 절반의 선거운동비용의 공영제가 이루어지고 15% 이상 득표자는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金聖順 委員** 한 가지 제안하자면, 의정활동 보고회는 못 하게 하고 의정활동 보고는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심규철 위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좋겠네요.

○**천정배 위원**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선거 120일 전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딱 120일 전에 등록을 했다고 치면

의정보고는 90일 전에 금지되는 것이니까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 30일 기간 동안에 집회를 하시든 보고회를 하시든 보고서를 만들어 발송하시든…… 더구나 지금 의정보고서의 수량이나 매수, 발송 횟수 이런 것은 전혀 제한이 없으니까 이렇게 고쳐도 신인보다는 훨씬 많은 기회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도 고려했습니다.

120일 전이라고 그러면 4월 15일 선거를 기준으로 하면 12월 17·18일쯤이 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30일간, 그때는 정기국회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정기국회는 통상적으로 12월 8일에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는 정치가 각박해 가지고 뒤로 미루고 예산통과가 안 되고 했는데 앞으로 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국회의원들이 더 노력해서 법정기한을 지키게 되겠지요. 그렇게 본다면 12월 17·18일부터 약 한 달 동안은 의정보고를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신인들은 아예 홍보물을 발송 못하게 되어 있고 선거에 들어가야 비로소 두 번에 걸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는데 의정보고서를 발송할 수 있다고 하면 홍보물에 관한 차이 때문에 신인과 너무 큰 불균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인과의 동등한 대우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30일 동안의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현역 의원의 경우 의정보고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신인과의 차별문제도 해소한다는 그런 조화를 도모한 안이 현재 합의된 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金聖順 委員** 관점을 국회의원 입장이나 신인의 입장에서 보지 말고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 이거예요. 유권자는 뭘 가지고 판단합니까? 일 많이 했으면 일 많이 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왜 90일 동안 못 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소극적이고 네거티브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신인이 더 활발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현역 국회의원도 의정활동 보고를 하고 많은 자료를 주어서 유권자가 풍부한 자료 속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 주어야지 다 묶어 가지고 못 뛰게 하고, 못 주게 하고…… 선거가 신인만을 위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천정배 위원** 참고해 보겠는데요, 제 기억으로는 과거 선관위에서 제출한 안 중에 그런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아닌 사람도 정견보고회라든가 정견발표회 같은 것을 허용할 수 있게 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향이 틀리겠지요.

국회의원들 의정보고 마음대로 하고 그 대신 신인들도 무작정 홍보물을 만들고 찾아다니면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이번에 14일로 줄이는 것인데 결국 120일로 확장시키는 형태로 되어서 너무 과잉 선거운동이 일어나는 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위에서 그런 점들을 두루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金聖順 委員** 유인물에 보면 명함형인쇄물 직접 배부, 이메일 발송, 선관위 규칙에 따른 인쇄물 발송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선관위 규칙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 인쇄물에다 자기소개나 정책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내서, 모이는회는 금하되……

○**천정배 위원** 여기서 인쇄물 발송이라는 것은 단 1회입니다.

○**金聖順 委員** 왜 1회를 하느냐는 말이에요.

○**천정배 위원** 그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명함형인쇄물 직접 배부는 예비후보자만 하는 것입니까, 선거 사무원도 다하는 것입니까?

○**원희룡 위원** 예비후보자 본인만 하는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金聖順 위원님이 발언하는 취지를 두 가지 측면으로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는데요. 의정보고서를 90일 전부터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국회의원이 의정활동한 것을 알리는 것 자체도 금지되는 것 아니냐 그런 측면을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들이 이메일을 발송하고 인쇄물을 발송할 때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잘 했다 그것은 충분히 홍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金聖順 委員** 좋아요. 이게 선거법소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세요. 합의된 대로 다 따라 갈 테니까…… 보고회는 못 하더라도 보고는 해야 유권자가 판단하는 데 충분한 자료가 되지 않겠느냐

나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결정할 때는 알아서 하세요.

○**委員長 李在五** 천 위원님!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정기국회가 연말에 끝납니다. 그러면 서울이나 수도권 의원들은 지역구가 가까우니까 괜찮은데, 지역구 의원들은 연말에 정기국회 끝나면 지방에 내려가서 의정보고서를 만들 기간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김성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보전된 비용을 환수하도록 한다, 원천적으로 당선이 무효이기 때문에 거슬러 가서 전부 다 국고로 환수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 경우에 현재는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서도 경력 란에 국회의원 경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개정법에서는 그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런 취지라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력 란에 국회의원 경력을 사용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정배 위원** 그점도 한번 고려해 보지요. 정확하게 하려면 몇 대 국회의원 하고 팔호에 선거무효됨, 당선무효됨 이렇게 써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요.

○**김성호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보시고요.

또 선거법에 관한 제1심 재판에서 피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 궐석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피고인이 국회의원인 경우에 한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하자, 이것을 굳이 국회의원에 한해서 할 필요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포할 수 있게 해야지요.

○**천정배 위원** 원래 재판을 받을 때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인권의 원칙이지요. 그러니까 어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해 가지고 징역을 보낸다 이것은 매우 가혹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형태의 인권침해입니다.

그러면 출석을 어떻게 시키느냐, 그때는 국회

의원이 아닌 사람은 법원에서 판사가 구속영장을 떼서 그 사람을 구인해다가 재판하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를 열었다고 해서 안 나오고 체포동의안을 올려 놓으면 국회의원들이 부결시키고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한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으로서의 매우 중요한 권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국회의원이 아닌 사람한테 확장시킨다는 것은 또 다른 헌법위반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지요.

○김성호 위원 그리고 2인 이상 무리를 지어 행진하거나 인사, 연호,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금지한다는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선거에서는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주어야 되는 것이지 2인 이상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그동안 왜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느냐 하면, 말은 자원봉사자라고 해 놓고 실제로는 뒤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대가 바뀌어서 자원봉사자에게 뒤로 돈을 주었을 때는 바로 처벌해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처벌될 각오를 하면서까지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는 별개의 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자원봉사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2명 아니라 10명이 나와서 하겠다고 해도 그것을 금지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천정배 위원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인 이상은 너무 과도한 것이, 예컨대 후보자하고 선거운동원 둘이 서서 인사하거나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나란히 서서 공손히 인사하고 있어도 걸릴 것 같거든요. 2인 이상은 좀 지나치다는 느낌을 갖습니다.

○원희룡 위원 유세차가 있는 대담·연설 장소에서 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서 연호하는 것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조항에서 거의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김성호 위원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자원봉사자는 인위적으로 동원하는 자원봉사자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자원봉사자가 있

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특정 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해서 우리 단체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했기 때문에 10명, 50명이라도 자기들이 알아서 동원하겠다는데 그것을 왜 금지시키느냐는 것이지요.

○원희룡 위원 의견은 참고하겠지만 소위에서는 이미 그런 경우까지 다 검토해서 합의를 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듣기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를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천정배 위원 김성호 위원께서는 이 합의내용 자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소위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설·대담 차량에서 지지자들이 연호하는 것은 현행법에 허용된 것을 그대로 살렸는데 이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다른 합의사항 중 하나는 후보자가 연설차량을 떠나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연설차량을 떠나서 선거운동할 때는 혼자만 인사를 해야지 후보자 옆에 운동원이 같이 서서 2명만 꾸벅 인사를 해도 여기에 걸릴 것 같다는 것인데 앞으로 조문정리 과정에서 아주 비현실적인 것은 고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2인 이상이라고 하면 혼자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조문정리 할 때 참고하십시오.

○천정배 위원 3인이나 5인 이상으로……

○金聖順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호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인데, 사실상 자원봉사자한테 돈이 많이 들거든요. 자원봉사자수가 많으면 실질적으로 일당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없애는 것이 좋고, 저는 현재 이것이 좋다고 봅니다.

○委員長 李在五 제가 끝으로 선거법소위와 관련하여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간판, 현판, 현수막 각 1개를 설치할 수가 있고 3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가 있고 명함형인쇄물을 후보자가 직접 배부할 수 있고 이메일을 발송할 수 있고 선관위 규칙에 따라 인쇄물을 한 번 발송할 수 있고,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0일 전부터 한 지역구에 4~5명 이상의 예비후보자가 나올 경우에 사

실상 선거운동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 14일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은, 유세차 가지고 거리연설하는 것 이외에는 똑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열선거나 혼탁선거나 금권선거, 이런 것들에 대한 시비가 분명히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서 5개 당에서 한 당의 후보가 5명씩이면 25명이 됩니다. 25명이 한 지역구에 전부 간판 걸고 현수막 걸고 후원회도 하고 선거운동 시작하게 되면 사실상 4개월 전부터 완전히 선거운동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니까, 이럴 경우 과열선거나 혼탁선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천정배 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점에 관해서도 앞으로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회하기 전에 다음 일정에 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개특위의 활동시한이 2월 9일로 되어 있고 2월 9일에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2월 9일에는 정치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절박한 시기에 있습니다. 하루하루 날은 가는데 선거구 획정도 안 되어 있고 또 신인들의 경우 예비 후보자로서 앞으로 법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을 120일을 허용할 생각인데 2월 9일에 통과가 되어도 시행은 2월 중순이 되어서 선거일까지 한 50~60일밖에 안 남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2월 9일 본회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정개특위의 스케줄을 잡아본다면 사실은 현행 국회법상 법사위가 하루 전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월 9일이 월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인 2월 7일에는 늦어도 법사위에서 통과되어야 될 텐데 토요일인 2월 7일에 하라고 할 수는 없고 2월 6일 법사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법사위에서는 5일의 유예기간이 있어야만 심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규철 위원** 예외가 또 있으니까요.

○**천정배 위원** 예외가 있기는 한데 정상적인 법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6일을 기준으로 역산해 보면 초일까지 산입해서 5일이니까 정개특위에서 2월 2일에

는 정치개혁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일종의 편법이고, 제가 편법을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우리 특위가 매우 신속하게 활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2월 2일이 아니더라도 각 소위 활동의 시한 그리고 전체회의를 언제까지 마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우리가 모인 김에 어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산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심규철 위원** 정당법과 관련되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소위 합의내용 중에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를 100인 이내로 합의를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당의 형편을 알아보니 사무처 당직자가 한 200인가량 됩니다. 지난해에 국회의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대거 정책요원으로 국회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아직 실천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법도 차제에 개정해서 중앙당 사무처 당직자들을 정책요원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길을 동시에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정개특위에서 같이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장선 위원** 마지막으로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이견을 보이는 것이 정당에 대한 후원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후원을 못하게 하고 개인도 임직원 같은 경우는 아예 후원을 못하도록 완전히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나라당에서는 “중앙당 후원회 자체를 완전히 없애고 도지부도 없애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상 중앙당을 완전히 없애는 것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놓은 안을 보면 국고보조금 중 40%는 연구소로 가고 10%는 여성발전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어서 50%만 가지고 중앙당과 도지부를 운영하다 보면 잘못하면 음성자금에 기댈 수 있는 요지가 크기 때문에 개인후원제 정도는 두자는 것이 저희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개인후원제를 다 두고 있고 그

투명성을 완전히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후원회를 완전히 없애려고 하는 전제라면 중앙당도 없애고 또 시·도지부도 없애야 되는데 지금 정당법에는 시·도지부는 오히려 강화하고 중앙당은 슬림화해서 100인 이내로 두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투명한 개인후원금은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정당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소액을 후원하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정당법에 중앙당이 존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알겠습니다.

유시민 위원, 말씀해 주시지요.

○**유시민 위원** 위원장님에 대한 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소위별로 회의를 해 왔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비교적 합의를 끌어낸 소위원회도 있고 또 난항을 겪은 소위원회도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보면 회의가 너무 느슨하게 진행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천정배 위원께서 날짜를 역산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 날짜 역산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 그래서 회의를 매일 늦게까지 하더라도 빨리 타결하자고 호소를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참석 못할 사정이 있는 위원님들은 당에서 교체를 해 주시든가 무슨 방법을 내야지요. 성원이 안 되어서 회의를 못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으로 가면 2월 9일이 아니라 2월 11일까지도 못 끝낼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각 소위원회나 전체회의 출석률을 체크하셔서 각 당 지도부에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소위원회나 혹은 전체회의가 각 당 간에 혹은 개별적으로 위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이견을 토로하고 표출시키고 때로는 부딪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절충한 다음에 어느 당도 만족스러워 하지 않고 또 어떤 국회의원도 100% 만족할 수 없는 절충안을 가지고 각 당에 가서 설득하여 끌고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회의조차 제대로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각 당 지도부에 다

시 주의를 환기시켜 주십시오.

지금 선거법의 가장 민감한 쟁점인 의원정수 문제 등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들을 이미 확인을 했고 또 일부 새로운 제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하여 간사회의나 필요하다면 원내 지도부가 함께 참여하는 회의라도 열어서 최대한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절충을 시도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구정 이후에 가급적이면 소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의견을 모아주기를 제가 기다렸고 그 기한을 충분히 주었던 것인데 방금 천정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월 9일까지 선거구 확정 작업을 마쳐야 정치개혁 입법이 마무리됩니다. 지금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2월 2일부터 4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여기에서 된 방안을 넘겨받아 확정해서 선거법 뒤에 별첨으로 붙여서 본회의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확정할 시한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촉박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법률 조문화 작업하는 동안에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선거법소위원회에서는 다음 세 가지를 빨리 합의해 주셔야 됩니다.

합의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것하고 지역구 수와 의원정수, 인구 상하한선과 인구산정 시점이라도 나와 주어야 선거구 확정위원회에서 작업에 들어가서 이것을 안 넘겨 놓으면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본회의에 정개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늦어도 2월 4일까지는 모든 법안이 넘어가야 되니까 다음주 월요일부터 선거구 확정위원회가 작업할 수 있게 하려면 오늘, 내일 중으로 4당 간사들이 한 번 더 모여서 지역구 수를 포함한 의원정수 문제, 인구 상하한선 문제, 인구산정 시점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율해 주시고 조율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위원장한테 넘겨주십시오. 그래야 위원장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4당 지도부 비상회의를 해서라도 의견을 내라든지 정개특위에서 강력한 건의를 하지요. 우리 위원회에서 안이 안 나왔는데 제가 안을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법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밤을 새더라도 오늘, 내일 중으로 일단 안을 다시 정

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정리된 것을 가지고 3 당 간사와 위원장이 모여서 다시 논의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각 당에 가서 의견수렴을 다시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것은 다른 법도 그렇겠습니까마는 특히 선거법인 경우 실제로 조문화하는 작업이 매우 방대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의를 해 놓아도 그것을 구체적으로 조문화하는 데에 있어서는 매우 세밀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주의도 많이 기울여야 하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특위 차원에서 의결되기 전이라도 법사위에 넘어가면 법사위에서 이 문제를 매우 세밀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법사위의 전문위원진이 또 굉장히 방대한 작업을 해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그럴 것이라면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원장님하고 협의해서 법사위의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전문위원들이 우리 특위의 전문위원진하고 전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어떤가, 실제로 우리 특위의 전문위원진, 법사위의 전문위원진, 선관위의 관계 직원들 이렇게 세 그룹이 모여서 지금부터 비상하게 밤을 새워가면서 작업해야 2월 9일의 시한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在五** 예, 그런 것은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규철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선거법 중 처벌조항 중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때의 법정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았습니다.

그 제안의 취지는 물론 허위사실을 선거기간에 유포시켜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려고 하는 것은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거라는 것이 결국은 말잔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의 과장으로 봐줄 수 있는 사안이 이 조항에 의해서 기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의 죄질은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악질적인 것은 엄벌에 처해야 되겠으나 순

간적인 표현의 과장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경우까지 이르는 경우를 좀 보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런 경우 선고유예를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250만 원을 선고해서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합니다마는 형평에 어긋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혹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구체적인 양형의 타당성을 위해 온당한 것이 아닌가 해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선거법소위에서는 그것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한 취지를 참작해 주셔서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委員長 李在五** 그런 부분은 개별적으로 선거법소위에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2월 3, 4일까지는 이것이 매듭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월 9일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넘어가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행정실에서는 각 당 대표들에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각 당의 다른 일들을 위해 차출되지 않도록 하는 공한을 보내 주시고 각 당 대표들에게 2월 9일 이전에 정개특위가 법안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하는 공한을 정식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와 협의하여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산회)

○**出席委員(14人)**

권영세	金聖順	김성호	손희정
심규철	오세훈	원희룡	유시민
이병석	李在五	張誠源	정의화
정장선	천정배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수석전문위원	李昌熙
전문위원	安秉玉
입법심의원	李秉吉